

스웨덴 신문평의회 소개

I. 설립배경

스웨덴에서 신문의 자유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하여 정부의 간섭을 엄금하고 모든 공문서의 무제한 공개를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1766년 및 1812년의 신문자유법(Decree of Press Freedom)을 통해서 신문보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었다. 그러나 스웨덴 언론인들은 지나친 자유의 확대가 남용을 가져오고 급기야 타율적인 규제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고 1916년 신문발행인협회, 신문인협회, 기자연맹의 3개 단체에서 각 1인씩의 위원 및 대리위원을 지명하여 신문공정실현위원회(Press Fair Practices Commission)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여러방면에서 많은 비판과 조언이 답지했고, 특히 동 위원회는 제재권의 결여, 비언론인의 위원배제, 사전의 법원불제소 서약, 확고한 적용준칙의 부재 등으로 1960년대에 들어서 비판과 개편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됨으로 말미암아, 1969년에 위원회를 개편 보강하고 새로이 신문옴부즈맨(Press Ombudsma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때 위원회의 명칭도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로 개칭하였다.

II. 구성

1969년에 개편 보강된 신문평의회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평의회는 의장을 포함 6인의 정위원과 12인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관의 자격이 있는 의장 1인, 현직 언론인 3인, 비언론계인사 2인이다. 한편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3인의 부의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들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현직 언론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전국언론인클럽, 신문기자협회, 신문발행인협회에서 각 1인씩 3인의 정위원과 각 2인씩 6인의 대리위원들이 선출되며, 비언론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국회옴부즈맨과 법조인협회에 의해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에서 2인의 정위원과 6인의 대리위원이 선임된다.

III. 운영

○ 평의회는 피해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심의하며 이 때 표결권은 정위원들에게만 있다. 대리위원들은 심의에는 참여하나 투표권은 없고 정위원을 대리하는 때에만 그를 대신하여 표결할 수 있다.

○ 평의회가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1) 의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2) 신문관계단체에서 선임된 위원 또는 그 대리인 1인, 3) 국회옴부즈맨과 법조인협회가 선임한 비언론인 출신 시민대표위원 또는 그 대리인 2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평의회는 평결을 의견표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이나 해당 신문사에 대하여 견책을 명할 수도 있다. 이 때 견책을 받은 해당사는 과료를 물게 되는데 이는 평의회 및 신문옴부즈맨의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 평의회는 평결이 있게 되면 당해신문은 평결문을 그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게재지면을 신문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의회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상을 원할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평의회는 활동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3개 신문단체 및 국회옴부즈맨과 법조인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IV. 신문옴부즈맨 제도 (The Press Ombudsman for the General Public)

1969년 평의회 개편, 보강과 함께 신설된 이 제도는 평의회 기능을 보강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들은 먼저 신문옴부즈맨에게 불만을 호소해야 하며 거기서 피해회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신문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신문옴부즈맨은 불만호소가 접수된지 1개월 내에 그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선임

국회옴부즈맨, 법조인협회장, 신문협조평의회 의장의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신문옴부즈맨을 선임한다. 임기는 3년이며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통상 현직 판사가 그 직을 휴직하고서 맡게 된다.

2. 구성

신문옴부즈맨은 법조인 1인을 보좌역으로 하고 사무직원 3인을 고용한다. 보수는 신문관계 3개 단체들로부터 받는다.

3. 활동

1) 옴부즈맨에게 불만을 호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해관계 있는자일 필요는 없다. 이점은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보다 넓다. 옴부즈맨이 불만호소를 접수하게 되면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해 편집인 등과 접촉하여 답변을 듣고 조정을 하게 되며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만약 불만을 호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정정을 거부하게 되

면 이 사건을 직접 평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옴부즈맨이 보기에 불만을 호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그 건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기각에 대하여 불만호소인은 1개월 내에 평의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 불만을 호소할만한 사유는 있으나 권익침해정도가 경미할 경우, 해당 신문사에 대하여 견책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데, 해당 신문사가 이에 대한 게재를 거부할 경우 불만호소인은 10일 이내에 평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문옴부즈맨과 국회옴부즈맨의 차이점

신문옴부즈맨은 신문평의회로부터 독립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 국회옴부즈맨과 그 성격이 유사하나 국회옴부즈맨은 국회소속공무원 신분임에 비해 신문옴부즈맨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독립적 신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신문옴부즈맨은 언론보도에 의해 권익이 침해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국회옴부즈맨은 관공서 계통의 기관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불만호소를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V.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조 : 스웨덴신문평의회는 일종의 명예법정으로서 신문보도윤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평의회가 심의하는 사안들은 정기구독, 판매나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 일반공중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정기간행물과 신문들에 관한 사안들(소위 명예사안들)이다.

제 2 조 : 평의회는 일반공중을 대신한 신문옴부즈맨이 제기하는 사안들을 심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옴부즈맨에게 제출되었을 때 그가 이것을 평의회에 다시 회부하더라도 평의회는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만약 옴부즈맨이 제소를 받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제소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는 평의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나 단체는 물론 일반 개인들도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 평의회는 또한 상기 사정과 다른 정황하의 안건 또는 상기 절차와 바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평의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평의회의 임무 중 전면적 조사를 진행시키는 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조 : 평의회는 의견진술 형식으로 평결문을 발표한다. 이 의견진술은 공개성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5 조 : 평의회는 의장 1 인과 5 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 1, 제 2 및 제 3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하게 된다.

국회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들 중 1 인 및 스웨덴 법조인협회회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은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3 인의 대리위원들을 둘 수 있으며, 다른 위원들도 각각 2 인의 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 전국신문클럽(the National Press Club), 스웨덴기자협회, 스웨덴신문발행인협회는 각각 1 인의 평의회위원과 위원 1 인당 2 인의 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옴부즈맨들 중 1 인과 스웨덴법조인협회회장은 평의회위원 2 인과 함께 그들에 대한 대리위원 6 인도 임명할 수 있다. 후자의 위원 2 인 및 대리위원 6 인을 선임할 시 일반대중과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인사를 선임하도록 배려한다. 그 인사들은 성인교육사업 또는 대중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노동단체, 소비자 및 상업단체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자라야 한다. 하지만 정기 간행물 및 신관이나 기타 어떤 언론사의 발행인들과 주종관계에 있는 자라면 위원 및 대리위원직에 부적합하다.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7 월 1 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된다. 위원은 새 임기개시 2 개월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상기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위원 및 대리위원들은 의장 및 부의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임기가 2 년인 의장과 부의장은 현직 판사나 전직판사인 변호사들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위원이나 대리위원이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케 될 경우 그들을 지명한 단체의 집행부에게 임시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반 공중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회의에 불참케 될 경우는 의장이 임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 7 조 : 평의회는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준비를 하고 의사록을 관리하며 기타 업무들을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제 8 조 : 평의회에서 평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위원들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즉, 의장이나 그의 대리인 중 1 인, 제 6 조 규정에 언급된 신문단체들이 각각 지명한 1 인의 위원이나 대리위원, 제 6 조 첫째단락 둘째문장에 의거해 임명된 2 인의 위원이나 그 대리위원들.

제 9 조 : 심의안건이 특정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관계될 경우, 심의과정에 그 해당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대표자 또는 직원의 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 평의회 전위원은 1 인 1 투표권을 가진다. 한 안건에 대한 표결시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주어진다. 결정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평의회 위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만장일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보류된 결정이 합의에 다다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유보사항들은 기록에 남겨둘 수 있다. 위원들의 개별적 투표상황을 외부인들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 대리위원들은 평의회 심의에 참석할 권리는 있으나 그들이 정위원을 대리하지 않는 한 투표권이 없다. 결정을 내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의회 전위원들과 전대리위원들의 참석하에 안건이 심의될 수 있다.

제 11 조 : 평의회에 의해 견책받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신문협조평의회(the Press Cooperation Council)가 규정한 행정과료를 납입해야 한다. 과료산출방법은 평의회 및 신문옴부즈맨(Press Ombudsman)이 과거 2 개년동안 사용한 경비와 현회계년도 중에 예정되는 필요경비와의 총액에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수효로 나눈 액수로 책정한다. 단, 주평균 최고 발행부수가 10,000 부가 넘는 신문은 3,900 크로너(Krona ? 스웨덴의 화폐단위)의 행정과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공중을 대표하는 신문옴부즈맨이 적용하는 업무규정 제 3 조 셋째 단락에서 지정된 안건들에 있어서는, 평의회가 신문옴부즈맨이 밝힌 견책내용을 강조하거나 해당 신문사가 문제 안건을 심의해 주도록 요청했을 때 평의회가 신문옴부즈맨의 견책내용과 거의 일치할 경우 행정과료를 지불하게 된다.

제 12 조 : 행정과료는 신문옴부즈맨과 신문평의회의 유지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문옴부즈맨재단에 납입해야 한다.

제 13 조 : 신문평의회로부터 견책받은 모든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평의회에서 재정된 평결전문을 삭제없이 지면의 현저한 위치에 게재해야 하며 게재를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평결문이 게재된 증거물을 신문옴부즈맨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 신문평의회는 제 6 조에 규정된 신문단체들, 관계국회옴부즈맨과 스웨덴법조인협회회장에게 연차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 15 조 : 신문평의회의 구성 및 활동상황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의회나 신문협조평의회에 의해서 수정사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동협조평의회는 관계국회옴부즈맨과 스웨덴법조인협회회장과 협의한 후 수정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VI. 신문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the Press, Radio and Television)

1. 보도규칙

- 정확한 보도

1) 대중매체는 사회속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공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편파적이지 않은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

2) 취재원에 대한 신빙성을 규명해야 한다. 취재한 사실이 전에 보도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사실과 논평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3) 제목과 도입기사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반론권

4) 보도내용 중 과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필요한 시기에 이를 정정해야 한다. 누구든 반론을 합법적으로 제기하게 되면 그에게 반론을 공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정보도 내지 반론은 지체없이 공표되어야 하며 그 보도문의 형식은 시청자들이 원보도문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끔 작성되어야 한다. 반론의 형태는 반드시 논설적 주장일 필요는 없다.

5) 스웨덴신문평의회 평결문 내용이 견책(censure)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신문사는 이를 지체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신문옴부즈맨의 평결이 그러할 때에도 해당 신문사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시민권익존중

6) 현저한 공익에 준하지 않고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할 수 없다. 기사문제나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사건을 보도할 경우 관계당사자들에게 입힐 피해를 염두에 두어 보도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자살이나 자살미수 사건을 보도할 경우 보도 대상자와 가족 및 친지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

8) 범죄사건 및 재난사고의 희생자들에 관한 보도를 할 경우 반드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보도 대상자의 인종, 가계 및 혈통, 국적, 성별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그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을 경우 제목이나 기사속에서 그 점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동일한 원칙이 관계자의 직업, 정치적 제휴상황 및 종교관에도 적용된다.

- 사진보도

10) 이 윤리강령의 일반적 원칙이 사진보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진은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11) 사진편집 과정에서 사진을 절단하거나 사진에 대한 제목을 잘못 달므로써 사진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불명의 사진이 신빙성있는 사진으로 보도되어서도 안된다.

- 보도의 공정성

12) 사실적 주장에 의해 비난받은 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국회옴부즈맨, 소비자옴부즈맨, 무역 및 산업옴부즈맨과 기타 공공단체들에 관한 보도를 할 경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도 및 비평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갈협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3)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보도할만한 이유가 있을 지라도 진상이 파악되기 전에는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범죄사건 관련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사건과 무관한 사실들을 불필요하게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14) 법원이나 유사기관의 판결을 보도함에 있어서 편파성을 배제하고 양측의 입장을 고르게 보도하여야 한다. 어느 재판관계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어진 것이라면 과거의 판결문도 현재의 것과 함께 보도되어야 한다.

- 성명비공개원칙

15)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어느 특정인의 성명이 공표되어야 할 사유가 현저하지 못하며 그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경우 그의 성명을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공직자와 범죄피의자 및 기결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6) 전술한 보도 대상자의 성명이 공표되지 않아야 될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그 당사자의 사진이나 직업, 직함, 나이, 성별과 기타 사항들도 그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도록 공표되지 말아야 한다.

17) 보도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어느 특정인의 전과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18) 경찰신문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사항들도 주의를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

19) 성명과 사진 공표에 대한 책임은 공표된 매체의 최고책임자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2. 직업윤리규칙

- 기자의 임무

- 1)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 자유기자로서의 입장을 위태롭게 할 본연의 임무외의 다른 임무를 할당받지 않아야 한다.
- 2) 기자는 상관외의 타인으로부터 취재임무를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압력이 가중되면 자신이 속한 신문사의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위임해야 한다.
- 3) 기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4) 경제관계 문제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 지방관공서, 각종 단체, 일반 기업,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관한 미공개 뉴스를 기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5) 기자는 직업적 양심에 위배되는 일과 굴욕적 임무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기자공동협약(the Collective Agreement for Journalists)」의 규정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 면담원칙

- 6) 어느 특정인과 면담하거나 이미 공표된 면담사실을 확인하려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며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면담에 익숙치 못한 자와 면담할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VII. 신문음부즈맨의 업무규정 (Standing Instruction for the Press Ombudsman—for the General Public)

제 1 조 : 스웨덴의 일반공중을 위한 신문옴부즈맨은 자발적으로 제기하거나 일반공중의 어느 누구로부터 불만호소건을 접수하는 경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들이 건설한 저널리즘의 도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2 조 : 신문옴부즈맨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매체가 자신의 과오를 신속히 정정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을 위해 지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련 매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문평의회정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신문옴부즈맨은, 건설한 저널리즘의 도를 일탈한 경우 권익침해 정도가 경미한 안건에 대해 견책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견책을 받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은 신문옴부즈맨의 견책문이 발표된 지 10 일 이내에 발행되는 처음 호에 견책문을 게재해야 하며 지면의 현저한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 신문옴부즈맨의 견책문 내용에 복종할 수 없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견책문을 게재하는 대신 견책문 발표 후 10 일 이내에 신문평의회에 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원불만호소인이 견책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도 신문평의회에 그 문제를 재심청구할 수 있으나 견책문이 발표된 지 1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 3 조 : 신문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안건을 신문평의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다음사항들에 근거해야 한다.

- 1) 안건에 불만을 호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
- 2) 불만호소안건이 매체의 신뢰성을 좌우할만큼 윤리적 관점에서나 권익침해정도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이 있을 것.
- 3) 불만호소안건이 비교적 최근의 언론보도에 해당될 것.

불만호소안건이 상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신문옴부즈맨은 동안건을 기각할 수있다. 이럴 경우 문제된 매체가 스스로 만족할만한 정정보도를 했는지의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 신문옴부즈맨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한 불만호소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표된 보도에 한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

제 4 조 : 신문옴부즈맨은 피해자 본인외의 타인으로부터 불만호소를 접수하더라도 견책문을 발표하거나 안건을 신문평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얻어내야 한다.

제 5 조 : 신문옴부즈맨이 불만호소안건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신문평의회에 그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만호소인이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본인이어야 한다. 만약 불만호소인이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면 신문평의회에 그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제 6 조 : 건설한 저널리즘의 도를 일탈하여 신문옴부즈맨에게 지적받은 매체사는 문제된 보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복사물을 요청된 양만큼 신문옴부즈맨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 신문옴부즈맨은 제 1 조부터 제 5 조까지 명시된 임무 말고도 일반공중에게 필요적절한 시기에 신문윤리문제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더욱이 신문옴부즈맨은 올바른 저널리즘의 실행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가능한한 협력해야 한다. 즉, 강연, 여러 간행물への 기고, 요청이 있을 시 언론인 재교육에의 참여 등과 같은 활동이 이 협력에 해당된다.

제 8 조 : 신문옴부즈맨은 신문윤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신문옴부즈맨을 임명할 경우 언론계 종사경험이 감안되어야 한다. 신문옴부즈맨은 3인의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된다. 즉, 국회 사법 및 내무행정위원들 중에서 1 인과 스웨덴법조인협회장과 신문협조평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신문옴부즈맨은 「일반공중을 대변하는 신문옴부즈맨 재단」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며, 이 재단은 전국신문클럽, 스웨덴신문발행인협회와 스웨덴기자협회에 의해 구성되며 재정이 뒷받침된다. 신문옴부즈맨은 임기가 3년이며, 용역과 보훈조건은 동재단과의 특별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재단이 적어도 임기종료 1년전에 옴부즈맨에게 임기종결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문옴부즈맨 스스로 적어도 임기종료 6개월 전에 평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통지시기에 관한 규정은 새 임기 때에도 동일하다.

제 9 조 : 신문옴부즈맨은 동재단의 동의없이 제 7 조에 명시된 임무들 외에는 다른 임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

제 10 조 : 본규정의 수정에 관한 사항은 신문협조평의회에 의해서 결정된다.